

내무국 소관  
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

1997. 12.

내 무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1. 개요

## 가.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예산액		증△감	
	금액	(%)	금액	(%)	금액	(%)
합계	1,061,208,067	100.0	1,068,892,411	100.0	△7,684,344	△0.7
지방세	160,332,000	15.1	160,332,000	15.0	-	-
세외수입	299,507,449	28.3	312,864,157	29.3	△13,356,708	△4.3
경상적세외수입	49,394,559	4.7	41,941,824	3.9	7,452,735	17.8
임시적세외수입	250,112,890	23.6	270,922,333	25.4	△20,809,443	△7.7
지방교부세	172,358,108	16.2	170,418,899	15.9	1,939,209	1.1
지방양여금	89,928,305	8.5	89,928,305	8.4	-	-
보조금	269,815,205	25.4	253,082,050	23.7	16,733,155	6.6
지방채	69,267,000	6.5	82,267,000	7.7	△13,000,000	△15.8

- '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,688억9,241만 1천원 대비 0.7%인 76억8,434만4천원이 감액된 10,612억806만7천원 규모임.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△ 감	
	금 액	(%)	금 액	(%)	금 액	(%)
합 계	816,296,426	100.0	810,486,856	100.0	5,809,570	0.7
지 방 세	160,332,000	19.7	160,332,000	19.8	-	-
세 외 수 입	130,604,654	16.0	143,066,822	17.7	△12,462,168	△8.7
경상적세외수입	19,782,460	2.4	19,475,725	2.4	306,735	1.6
임시적세외수입	110,822,194	13.6	123,591,097	15.3	△12,768,903	△10.3
지 방 교 부 세	172,358,108	21.1	170,418,899	21.0	1,939,209	1.1
지 방 양 여 금	89,928,305	11.0	89,928,305	11.1	-	-
보 조 금	249,806,359	30.6	233,473,830	28.8	16,332,529	7.0
지 방 채	13,267,000	1.6	13,267,000	1.6	-	-

○ '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,104억8,685만6천원 대비 0.7%인 58억957만원이 증액된 8,162억9,642만6천원 규모임.

나.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△ 감	
	금 액	(%)	금 액	(%)	금 액	(%)
합 계	816,296,426	100.0	810,486,856	100.0	5,809,570	0.7
인 건 비	52,944,742	6.5	54,030,178	6.7	△1,085,436	△2.0
물 건 비	45,353,375	5.6	45,434,288	5.6	△80,913	△0.2
이 전 경 비	185,829,685	22.8	187,371,002	23.1	△1,541,317	△0.8
자 본 지 출	500,536,975	61.3	494,753,561	61.1	5,783,414	1.2
용 자 및 출 자	6,016,000	0.7	6,016,000	0.7	-	-
보 전 재 원	4,956,829	0.6	1,956,829	0.2	3,000,000	153.3
내 부 거 래	17,273,441	2.1	15,896,002	2.0	1,377,439	8.7
예 비 비 및 기 타	3,385,379	0.4	5,028,996	0.6	△1,643,617	△32.7

○ '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,104억8,685만6천원 대비 0.7%인 58억957만원이 증액된 8,162억9,642만6천원 규모임.

다.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△ 감	
	금 액	(%)	금 액	(%)	금 액	(%)
합 계	105,659,113	100.0	103,539,837	100.0	2,119,276	2.0
인 건 비	330,023	0.3	330,023	0.3	-	-
물 건 비	3,806,611	3.6	3,709,720	3.6	96,891	2.6
이 전 경 비	96,469,530	91.3	97,447,145	94.1	△977,615	△1.0
자 본 지 출	2,041,699	1.9	2,041,699	2.0	-	-
용 자 및 출 자	-	-	-	-	-	-
보 전 재 원	3,000,000	2.9	-	-	3,000,000	-
내 부 거 래	11,250	-	11,250	-	-	-
예 비 비 및 기 타	-	-	-	-	-	-

- 내무국 소관 '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,056억5,91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,035억3,983만7천원에 비하여 2.0%인 21억1,927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
-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,162억9,642만6천원에 비하여 12.9%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.

## 2. 검토의견

가. '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

금번 '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,688억9,241만1천원 대비 0.7%인 76억8,434만4천원이 감액된 10,612억806만7천원 규모로

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8억957만원이 증액된 8,162억9,642만6천원규모임.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8억957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

- 세외수입 △124억6,216만8천원 (8.7% 감)
- 지방교부세 19억3,920만9천원 (1.1% 증)
- 보조금 163억3,252만9천원 (7.0% 증) 으로

이는 '97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액 계상과 경상적세외수입인 보건검사 수수료가 증액되었고,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정보시범사업의 8건의 중앙기금사업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분담금 및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처리시설 부담금, 잡수입인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적립금 해지수입이 감액조치 되었으며

'97 수해 복구사업의 3건의 지방교부세와 여권발급 업무추진의 57개 국고보조금사업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.

나.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

'97년도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'97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, 연가보상금, 각종분담금 및 출연금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.

○ 이의 증감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

- 물건비 9,689만1천원 (2.6% 증)
- 이전경비 △9억7,761만5천원 (1.0% 감)
- 보전재원 30억원 ( - ) 으로

편성되어 있음.

○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

첫째, 물건비 38억661만1천원은 기정예산액 37억972만원에 비해 2.6%인 9,689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

- 예산기능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

- 명절휴가비 △270만원
- 연가보상비 9,959만1천원 으로

이는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인 복리후생비의 명절휴가비가 감액조치 되었고, 연가보상비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.

둘째, 이전경비 964억6,953만원은 기정예산액 974억4,714만5천원에 비해 1.0%인 9억7,761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

- 예산기능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

-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△3억1,057만6천원
- 의료보험료 부담금 △1억5,168만9천원
- 국고대여 장학기금 출연 △2억4,798만6천원
- 공로연수 및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 △4,860만원
- 특별상여수당 △1억7,376만4천원
- 내무부연수원 장기과정 위탁교육비 △4,500만원 으로

이는 각종부담금 및 출연금, 산업시찰경비, 위탁교육비를 정리차원에서 감액조치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에 대한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셋째, 보전재원에 있어서는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

이는 '97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의 원금상환액을 계상한 것으로 승인하여 증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